

포럼 <<<

‘한가위 정치’를 위한 소망



박효중

서울대 교수  
정치학

『추석이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시절, 보름달이 휘황성 떠오르는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풍성한 어떤 것일까, 동그런 어떤 것일까, 아니면 툭 다알까. 정부나 정치인들도 그 특유의 정치감각으로 느끼는 소화가 적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그들은 추석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不嫌의 정치’ 더 읊어느니라

귀성객들은 고향에 가서 선물바구니도 풀어 놓겠지만, 아이기 보따리도 함께 풀어놓을 것이다. 아이 집세와 고향의 친척들도 자신들의 아이를 전람으로써 ‘아이꽃’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추석민심이 되는 것인데, 그 민심의 색깔이 어쩔지 궁금하다. 어쨌든 민심에 귀를 기울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치의 료이다. 그렇지 못하고 ‘나는 잘했는데 왜 사람이 틀리느냐’고 타박하면, 오만한 정부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정치인들이 추석민심보다 더 절박하게 귀를 기울이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자연이다. 추석이 알려주는 자연은 풍요와 결실이다. 풍요의 계절에 ‘불이(不火)의 정치’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읊어느니라 일 이 있을까, 유산분할과 참여정부가 주도해온 정치의 풍요와 정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무엇인가 큰소리로 내고 갑분율박하며 로드랜드 많이 짜고 최근에는 ‘비전 2030’을 내놓기까지 했는데, ‘태산명동 사일비(泰山鳴動 扇一匹)’이라고 했다가, 별로 기억할 만한 결실과 보람이 없다. 막을 것이 풍요해졌는가, 일지리가 잦아졌는가. 아니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적어졌는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전망이 커졌는가. 참여정부의 정치에 결실은 없는데, 풍지 스러림은 사남기만 하다. 열매를 맺는 일 없이 수줍음 우기지만 하는 집 초처럼 말이다.

정치가 풍요로워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간다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울라내리는 눈물을 깎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그것도 의미있는 말이지만, 사람들의 불안을 없애주거나 최소화 시켜주는 것을 정치의 일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가 사람들의 불안을 없애는게능 가중시킨 것은 없는가. 지금 민생은 참으로 어렵다. 낮은 경제성장률이 말해주는 것은 이런데, 사람은 사람대로 안되고 장사도 힘들고 취직도 안된다. 공무원시험이 있으면 최소한 몇백 대 일이다. 또 국가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다. 현 정부가 어떻게 했기에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인가. 한발재판소장은 왜 아직까지 공석인가. 아랍이 ‘동나’를 부러서인가, 아니면 정부의 고집으로 ‘로드정적’ 때문인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떤가. 정부는 북한을 포용하면 북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들이 잘 풀릴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찌전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북한 의무성이 핵심임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는 포용력을 발휘해 회신을 다해왔는데 왜 항상 북한은 못 하는 ‘못나’가 되는가. 우리 국민이 이리저리 도와준 게 아니다. 언젠가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번에는 핵실험을 한다고 위협하는가.

보름달같은 ‘등근 정치’ 해보라

이 와중에 낭보가 있는 건 아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에 거의 가까워졌다는 소식이야. 문제는 이런 낭보 소식이 불안한 소식에 비해 기쁨에 흥나고하고 불만의 진원지가 정치라는 데 있다. 우리는 언제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는가. 정부는 이번 추석이 한가위 보름달을 보고 자연의 풍요로움을 배우야 한다. 풍요의 말만 알겠고 허망한 미래만 그리지 말고 현 ‘등근 정치’를 해보라. ‘등근 정치’를 하기에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편이 낫다.

포럼 <<<

장묘·추모문화, 이젠 바꿀 때다



전경성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시 입법위원

『추석 명절이다. 모친 태몽을 이기며 추수한 곡식으로 조상께 제사를 올리고 아이들은 햇과일 입맛에 푹 빠지는 계절이다. 그런데 올해에도 별초와 성묘행렬로 인한 교통혼잡은 예나 다름 없고,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으로 변해가는 아쉬움도 여전하다.

‘남비’에 가로막힌 화장·납골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은 대형 공원묘지인 경기도 고양시 용마리공원과 수원의 연화장, 부인의 영락공원에서 9월30일과 10월1일 추모 음악회와 문화행사가 열렸다는 것이다. 행사 내용은 시 낭독에 교향악단과 합창단, 가수까지 함께 가락을 연주하고 합창과 독창이 반소리가 지 결정되었다고 한다. 시민들에게 공원묘지가 혐오시설이 아니고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바람직한 행사다.

이런 행사로는 네덜란드의 베스테르벨트 공

장식했는데, 올해는 6월11일에 있었다. 수련면이 장식한 올해 행사 프로그램은 로렌스 반 투벤이 자신이 만든 곡과 편곡한 작품들을 직접 연주했다. 왕립합창단(Mastrechtse Staa)이 구노, 베르디의 작품을 불렀고 마지크 곡은 투벤이 합창단과 함께 배다 린이 불러 유명해진 ‘우리 만나 나야’를 불러 참석한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내년 6월1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러한 문화행사와 지금의 추모문화를 보면 어떠한가. 우리나라 장사제도의 특징은 매장용하고 분골을 만드는 것이다. 얼마 전부터 묘지의 국토 정식을 막기 위해 화장사야안동이 성과를 올리고 있으나 매장 선호 관습은 여전히 다.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천리(天理)인데도 우리 고장에 추모시설 설치하는 걸사 반대한다는 의식도 여전히 있다. 그 결과 전국 20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화장장이 있는 곳은 47개뿐이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서울수도 이웃 고양시와 성남시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용량이 초과하여 화장대란이 턱질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어느 화장장에서는 화장을 제때에 하지 못해 장례식을 연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한다.

더 안타까운 것은 추모시설 설치를 막는 이유 가운데는 환경 법제도와 정부 기관의 의식도 한몫 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0년 매장 및 화장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지만 변한 것은 별로 없다. 지난해 전국 화장장이 52.6%로 매장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신 화장시설이나 납골, 장례시설은 보건위생상 전혀 문제가 없는 데도 ‘도시계획 사실의 결정·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에서 도축장이 포함된 보건위생시설로 분류해 놓고 설치 지역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를 지역 내 설치반대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공설 화장장과 사설 화장장 제도를 병행하고 있으나 공설 화장장 설치가 어려운데도 사설 화장장 설치 신고를 하면 주민 반대를 구실로 신고를 반려하고 결국 소송사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설도 사설도 못한다는 말이다.

수목장·조각장으로 문화공간 가꿔야

이제 우리의 추모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대규모 공원묘지를 재정비하여 시민이 찾는 공원

으로 바꾸자. 그러기 위해서는 종전의 불만족을 경장(平葬) 식으로 하고 잔디밭에 묻는 소규모 납골장이나 수목장, 조각장(彫刻葬·조각작품 안에 안치)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친근한 문화공원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행사를 집에서 지내는 제사와 함께 공원에서 가족단위로 하도록 권장한다. 전통적인 관습과 경제적인 이해에 얽힌 추모 문화를 대표적 납비현상을 해결하는 모범이 되도록 이번 추석에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뜻이다.

北核,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北核,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갈 데까지 가라. 북한은 3일 의무성 성명을 통해 “앞으로 핵실험을 하게 된다”고 선언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7·5 미사일 도발에 이어 핵실험 결정 의지까지 전명한 것은 세계를 상대로 도발 수위를 더 높였다는 함박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제시해온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어서 국제사회로부터 완전 고립은 물론 파국을 초초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라고 강변하며 핵실험을 선언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진기로 합의했다는 ‘공통의 표창장 접근 방안’ 제의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이기도 하다. 우리는 북핵 불용(不許) 원칙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북한은 용납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한다.

사설

北核,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백악관이 북 의무성 성명 직후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무모하고 도발적인 시도를 단념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어떤 경우에도 북한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의 재확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즉각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로서도 국제사회로서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하며, 국제사회 공동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직설적으로 경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7·5 미사일 도발에 따른 7·15 대북 결의 제165호 수순을 훨씬 넘어서는 대북 제재가 불가피할 것이다. 안보리는 북한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무력 제재 조치까지 예외된 유엔 헌장 제7장 인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추가 도발, 추가 위협 시도를 단념하고 6자회담에 조건없이 복귀하는 길밖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자시하기 바란다.

北核,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북핵 문제가 이렇듯 파국 상황에 직면하기에 이르렀다. 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북한 강박이 일변도인 것이 한두번도 아니다. 2004년 11월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설에서 “핵무기와 미사일이 자위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했으며 9월7일 평안도 헬싱키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실제 무력 공격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한 것”으로 인신으로 일관했다. 9월28일 MBC 토크에서도 “공통, 포괄 접근”과 관련, 북측으로부터 부정적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유난히 강조한 노 대통령이야. 사실 정부가 밝힌 일종의 수위로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 그쳤다. 노 정권이 보다 단호한 자세를 당부해 마지 않았다. 북한이 계속 핵에 집착하면 대북 정책 전반의 일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대한민국

『전후 세계사를 통틀어 ‘분단국 출신 유엔 수석’이 가

다. 특히 이번 대립의 20세기를 넘어 21세기 보다 나은 세계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가 홀로 남은 분단국 대한민국에서 발신되기에 이쁜 것이다.

반기문 외교부상부 장관은 2인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의 제4차 예비투표에서 12표(총 14표)를 포함해 14표, 기권 1표(총 15표)를 얻어 1인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확정되었다. 안보리의 9월 투표, 16일은 전후한 총회 선출결과를 앞두고 있던 만큼, 16일에는 총회와 관련이 없다고 한다. ‘반 총장’은 서는 개인차원의 역량이 돋보이던 대한민국 전체로서도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서 차지해온 위상을 짐작할 경사가 아닐 수 없다.

1948년 건국과정, 또 6·25라는 세계 차원의 이데올로기 전쟁을 유엔의 이름으로 극복한 대한민국이 산업화로 성장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왔다는 사실이 비록 ‘반 총장’은 곧 ‘유엔의 빛나는 일적’ 그 다른 표현이

다. 1948년 건국과정, 또 6·25라는 세계 차원의 이데올로기 전쟁을 유엔의 이름으로 극복한 대한민국이 산업화로 성장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왔다는 사실이 비록 ‘반 총장’은 곧 ‘유엔의 빛나는 일적’ 그 다른 표현이

다. 특히 이번 대립의 20세기를 넘어 21세기 보다 나은 세계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가 홀로 남은 분단국 대한민국에서 발신되기에 이쁜 것이다.

기업 더 옥죄는 상법개정안 반대한다

『법무부가 4일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활동 규 제 차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경제계가 기업경영 환경을 더 옥죄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해 온 ‘이중대표소송제’나 ‘집행임원제’는 물론, 입법규제 대상으로는 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회사기회’의 유용금지라는 독소까지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기회 유용금지란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자기 혹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을 금한다는 취지이지만 경영진의 신랄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선관주의 의무·善管注意義務)를 무한 확대함으로써 상법 체계 전반을 왜곡시켜 납소(蠶蝕)의 폐해를 양산할 것이다.

배제할 경우 사실상의 대주주는 경영권 행사를 불가능 해질 수 있다. 이중대표소송제 또한 모회사 주주들에게 자회사 경영에 대한 간섭의 길을 터주는 것밖에 안된다. 결국 자회사나 자회사 주주보다는 모회사 주주의 눈치를 더 보게 할 것이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독립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취지라면 그것은 독립경영 훼손을 막을 수단을 독립경영 훼손에서 찾겠다는 식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기업 더 옥죄는 상법개정안 반대한다

김영임위원도 도입되지도 않는다. 법을 통해 회사의 소

세기에 상사 관련 입법추세는 규제완화와 친기업정책 경향이다. 일련은 회사법을 시장친화적으로 개정한 후 버블경제 10년의 위기를 극복하기 시작했고, 독일도 회사법을 고쳐 30년간 유지해 온 대주주의 일관된 규정을 철폐했다. 이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해 세대로 나아가 세계 우수기업과 경쟁해야 할 국내 기업의 발목을 ‘기업 약법’이다. 법으로 등기사들의 업무집행권을